

부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48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상순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가소23520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5,080원, 선정자 B에게 103,370원, 선정자 C에게 94,650원, 선정자 D에게 89,030원, 선정자 E에게 85,920원, 선정자 F에게 92,950원, 선정자 G에게 63,580원, 선정자 H에게 81,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금정구 I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J호를 선정자 B가, K호를 선정자 C이, L호를 선정자 D이, M호를 선정자 E가, N호를 선정자 F(O와 각 1/2 지분씩)이, P호를 원고가, Q호를 선정자 G이, R호를 선정자 H가 각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인근 수도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로 하나의 수도배관이 인입되어 있고 거기에는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7년경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있는 수도배관에도 세대별계량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인근 수도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까지 개별로 배관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인입된 수도관으로부터 각 세대까지 이미 존재하는 배관에다가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한 것이다).

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장은 2018. 4.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소유 호실에 관한 수도사용량에 관하여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계량기의 전체 사용량 중 각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사용량으로 간주하여 각 세대별사용량에 안분(1ton 단위로 버림하여 계산)하여 합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4.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 합계가 주계량기의 전체 사용량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의 전체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원고 등에게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위 각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사용량 명목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에게 각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요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세대별 사용량을 초과하여 부과한

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80원, 선정자 B에게 103,370원, 선정자 C에게 94,650원, 선정자 D에게 89,030원, 선정자 E에게 85,920원, 선정자 F에게 92,950원, 선정자 G에게 63,580원, 선정자 H에게 81,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조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장이 원고 등에게 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2018. 2. 7. 부산광역시조례 제5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¹⁾

에

의하면, 시장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제10조 제1항), 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를 할 수 없으면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이와 같이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정한다[제31조 제1항 제3호,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2018. 7. 11. 부산광역시규칙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1.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공동사용량을 급수중지 세대²⁾를 제외한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2018. 4.경부터 2021. 10.경까지의 원고 등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일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설행할 수 있다.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장이 2018. 4.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소유 호실에 관한 수도사용량에 관하여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계량기의 전체 사용량이 각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동사용량으로 간주하여 각 세대별사용량에 안분(1ton 단위로 버림하여 계산)하여 합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3항,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고 세대 수(급수중지 세대 등을 제외)로 나누어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장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는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김아름, 판사 이순혁

별지

선 정 자 명 단

- 1. A(선정당사자)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 끝.

- 1) 그 이후 개정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 본 조례만을 기재한다.

- 2) 구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2018. 7. 11. 부산광역시규칙 제395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 “급수중지 세대” 부분이 “급수중지 세대 및 사용량이 없는 세대”로 개정되었다.